

④ 타인토지 출입 가능 ⑤ 분할 시행 가능

제1종전용주거(단독. 양호50,100) 제2종전용주거(공동, 양호50,150) 제1종일반주거(4]편리60,200) 제2종일반주거(조례:편리60,250) 제3종일반주거(총X, 편리50,300) 준주거지역(상업+업무,70,500) 주거지역 도시지역 보전 20.80 생산 20,80 관리지역 용도 중심상업(90,1500) 일반상업(80,1300) 유통상업(80,1100) 단독주택X 근린상업(70, 900) 계획 40,100 지역 상업지역 농림지역 20,80 전용공업(공해성,70,300) 단독 X 일반공업(환경X,70,350) 준공업(주거+상업+업무,70,400) 공업지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보전녹지(개발X, 20,80) 생산녹지(보류△,20,100)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 20.80 자연녹지(개발O 20 100) 보전신지. → 지연.수지원.해안.생태계.상수원.문화재 / 수신지원보호육성 최고높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(세분되지 않음)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/중요시설물/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 보호지구 ① 조례세분 ⇒ 경관, 중요시설물보호,특정용도제한 방화지구 ② 리모델링 완화 지구 ⇒ 경관, 고도지구는 완화 방재지구 개정으로 **시가지방재지구와**, **재연방재지구**2가지로 세분 취락지구 재연/집단 용도지구 ★행위제한 고도:도사군관리계힉 경관지구 자연/시가지/특화 개발진흥:계획O 특정용도제하지구 특정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지구 자연취랙:국/시 **관광휴양/신업유통/**㈜거/복합/특정 개발진흥지구 집단취락:개특법 복합용도지구 대상:일주/일공/계관 (1) 용도지역 + 용도지역 : 중복 X, (미지정 / 미세분: 강한지역 적용: 모두 보전지역 따르며 건20,용80)) ② 용도지구 - 지역위에 지정, 특정지역지정, 중복지정 O(특정목적을 위해 여러지구도 지정 가능) ③ 용도구역 - 중복O, 도시 과대화 과밀화방지 대통령령 용도지역의 행위제 한을 **강화 또는 완** 화하기 위해!! 입지규제최소구역(별도로 정리) 국장: (무질서확산.자연환경.생활환경.보안상) ⇒ 개특법 개발제한구역 용도구역 **사도,대장** (식생양호 산지) 도시공원...법 도시자연공원구역 _.무자생보 시가화조정구역 시.도(국가계획->국장(시기화방지,단계적개발:시계)국계법 수사자워보호구역 해양수산부장관 (해안+인접지역) ⇒ 수산자원관리법

1.개발밀도관리구역(by<mark>특광특특시장군수</mark>):주상공(행위제한강화:건,용(50%)) 2.기반시설부담구역(by <mark>특광특특시장군수</mark>):200㎡초과 신축/증축 행위시

① 지정대상: 개발⇒행위제한 완화 및 해제, 인구 20%↑, 허가신청건수 20%↑)Must ② 지정고시일 ~ 1년내 기반시설설치계획 미수립시 당해 지역은 1년이 되는날의 다음날 해제 된 것으로 본다. ③ 지구단위계획수립⇒기반시설설치계획수립 간주됨.

정비구역(by 원칙: 특광특특시장군수(광역시 군수제외) 국토장은 지정 X

- ① 절차: 정비기본계획 ⇒ 정비계획으로 지정
- ② 주거환경개선사업, 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(3가지 사업으로 통폐합됨)

최등학교 or

10만㎡이상